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766호(號) 1932(昭和 7)년 11월 26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30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2(昭和 7)년 11월 26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2(昭和 7)년 11월 26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국선(局線)과 사설철도선(私設鐵道線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조선철도선(朝鮮鐵道線) 벼[粃] 외(外) 3품(品)의 항(項) 중(中) 착역란(著驛欄)에 「, 동막(東幕)」을 추가(追加)하며, 기사란(記事欄) 「3」을 「4」로 개정(改正)하고 아래[左]의 1호(號)를 추가(追加)함.

3 벼[粃] 및 소맥(小麥)의 표준화차(標準貨車)에 대(對)한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톤수(最低噸數)를 20톤(噸)으로 함.